

제3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1일간)

<2026. 7. 30.(목) 10:30 제1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 동 의 안 】



수석전문위원 엄은용

목 차

연 번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부서)	페이지
1	10-6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장 (기획예산과)	1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10-6호
------------	--------

제출년월일 : 2026. 7. 29.

제 출 자 : 오 산 시 장

□ 제안이유

- 세교3지구 글로벌 AI 허브 추진을 통해 오산시의 미래도시 구상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글로벌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AI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실적을 확보하고자 AI 전문지식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위탁 추진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다)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5조의2, 제5조의3

2) 추진 필요성

가) AI 기술 환경과 글로벌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AI 개발·활용 및 산업 육성 전반에서 높은 윤리성, 신뢰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나) 정부 정책사업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오산시 세교3지구에 유치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오산시 미래도시 구상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1)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업무
- 2) 협력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 3) 글로벌 AI 허브 유치 제안서·전략 수립 지원
- 4) 글로벌 AI 허브 관련 조사·분석
- 5) 홍보·커뮤니케이션 및 자문·컨설팅

라.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 ~ 2027. 3.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1) 공개모집 : 공고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2) 자격요건
 - 가) 비영리 단체·기관·법인
 - 나) AI 정책 및 기술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 보유
 - 다) 국제기구·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실질적 협력 실적 보유
- 3) 선정방법 :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1,000백만원 (시비)

2) 산출근거¹⁾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계		1,000,000
오 산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설 치	○ 사무공간 조성 및 인력 확보 - 사무공간(관내) 조성 -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인력 ²⁾ 확보	350,000
글 로 벌 협 력 체 계 구 축 · 구 상	○ 분석 조사 및 파트너 리스트업 - 협력 의사 타진, 협력과제 발굴, 해결모델 기획 ○ 글로벌 AI 허브 유치 공모 대응 지원 - 글로벌 AI 정책 동향 파악, 공모 지침 분석, 유치제안서 또는 유치계획서 작성 지원	150,000
글 로 벌 협 력 체 계 초 청 행 사	○ 글로벌 협력 국제회의 개최(사전협의 시) -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연구기관 초청 - LOI/MOU 3건 이상	250,000
글 로 벌 협 력 과 제	○ AI 도입 및 활용 실증 과제 4건	100,000
운 영 비	○ 사무공간 임대료 ○ 각 종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 수용비, 출장비, 회계감사비, 위탁수수료, 보증보험료 등 ○ 기타 기본적인 사무공간 운영 소요 경비	150,000

1)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세부 진행 사항별 산출내역 제안 요청을 위한 기초 산출

2) 국제기구 섭외 능력, 글로벌 협력과제 발굴 및 정책 모델링 역량, 국내외 AI 관련 정책 동향 등 전문지식과 국제기구 행사 경험이 풍부한 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 市 사무 규정 여부

가)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5조의2

2) 해당 사무의 위탁 근거

가) 「오산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나)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5조의3

다) 오산시 기획예산과-9138(2026. 7. 27.)호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1.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검토

-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오산시는 글로벌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계 행정 실증 모델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위탁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2. 주요 사업내용의 검토

- 본 사업의 위탁 대상 사무 등의 범위를 검토해 보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AI 허브 유치 제안서·전략 수립 지원, 홍보·커뮤니케이션 및 자문·컨설팅 등인데,
-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1차년도(2026년)에는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오산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설치·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기획 협력 사업 구상 및 글로벌 AI 허브 공모에 대응하며,
- 2차년도(2027년)에는 협력체계 유지관리 행정지원 및 홍보·자문·컨설팅 업무를 유지한다는 계획임.

3. 검토의견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사전 심의하였으며(2026. 07. 28. 적정),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성과지표 및 실효성 관련, 예산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추후 사업 추진시 보완 및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위탁사무 중 주요사무가 정부 정책사업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공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오산시가 민간 전문기관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경우, 오산시는 사무공간 조성 및 실증 구현 인프라 제공을, 전문기관은 과제 발굴 및 글로벌 AI 허브 유치 공모 대응 등을 수행하면 별도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위탁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없을 것임.